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639 제출연월일: 2024. 12. 18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,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종전의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·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관하는 한편,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종전의 금고 이상의 '형'을 선고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'실형'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663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를 삭제한다.

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"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"를 "지역심의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형"을 "실형"으로 한다. 제7조제1항 중 "중앙심의위원회"를 "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·고도보존육성위원회(이하 "역사문화권정비·고도보존육성위원회"라 한다)"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"중앙심의위원회"를 "역사문화권정비·고도보존육성위원회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중앙심의위원회"를 각각 "역사문화권정비·고도보존육성위원회"로 한 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중앙심의위 원회"를 각각 "역사문화권정비·고도보존육성위원회"로 한다.

제15조 중 "중앙심의위원회"를 "역사문화권정비·고도보존육성위원회"로 한다.

제25조의2 중 "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"를 "지역심의

위원회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폐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·고도보존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 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·고도보존육성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.
 -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	정	안	
제5조(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	<u><</u> 삭	제>			
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					
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					
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					
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고도보존					
육성중앙심의위원회(이하 "중					
<u>앙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u>					
1. 제7조에 따른 고도의 지정에					
관한 사항					
2.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					
기본계획에 관한 사항					
<u>3. 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</u>					
•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					
<u>항</u>					
4.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					
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					
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					
5.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					
지정에 관한 사항					
6. 그 밖에 보존육성사업과 주					
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으					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					
<u>항</u>					
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					

- 명,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.
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기획재정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.
- 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
- 2. 고도를 관할하는 광역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 급·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
- 3.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
- 4.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

<u>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</u> 2명 이상

-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·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,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- 1. 삭 제
- 2. (생략)
- 3. 금고 이상의 <u>형</u>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• 5. (생략)

제7조(고도의 지정 등) ① 국가유

지역심의위원회
2. (현행과 같음)
3 <u>실형</u>
4.·5. (현행과 같음)
제7조(고도의 지정 등) ①

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 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<u>중앙심의위</u> 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 다.

② • ③ (생 략)

- 제8조(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·② (생 략)
 -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(생 략)

제10조(지구의 지정 등) ① 국가 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다음 각 호의지구(이하 "지정지구"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
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
6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・
고도보존육성위원회(이하 "역
사문화권정비 • 고도보존육성위
<u>원회"라 한다)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세8조(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
수립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3
역사문화권정비·고도
보존육성위원회
④ (현행과 같음)
세10조(지구의 지정 등) ①
역사문화권정비·고도보
<u> 존육성위원회</u>

- 1. 2. (생략)
-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있다.
- 1. ~ 3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- 제11조(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) 지 ①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할 수 없다. 다만,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.
 - 1. ~ 5. (생략)
 -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와 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이 보합하는 정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국가유산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.
 - ③ ~ ⑨ (생 략)

제15조(사업시행자) 보존육성사업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
역사
문화권정비 • 고도보존육성위원
<u> 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)
①
역사
문화권정비 • 고도보존육성위원
ঐ
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
역사문
화권정비 • 고도보존육성위원회
· ③ ~ ⑨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사업시행자)
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

및 주민지원사업은 고도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유산청장과의 협의와 <u>중앙심의</u>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자로 지정하는 자(이하 "사업시 행자"라 한다)가 시행한다.

제25조의2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역사문화
권정비·고도보존육성위원회
제25조의2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
원 의제) <u>지역심의위원회</u>
.